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5,924,930	14,877,748
일반회계	477,190,058	14,315,702
특별회계	18,734,872	562,046
기타특별회계	18,734,872	562,046
상수도	13,060,943	391,828
의료급여기금	1,904,819	57,145
기초생활보장기금	2,170,000	65,100
주민소득지원기금	255,468	7,664
주택사업	268,200	8,046
기반조성사업	8,824	265
회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	332,269	9,968
회원산업단지조성지원	532,369	15,971
공유임야관리	201,980	6,05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15,63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877,748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